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항공분야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1년 전국 소방공무원 항공분야(항공조종, 정비, 운항·관제) 신규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26일

소 방 청 장

I. 시험개요

1. 채용예정인원 : 총 46명(조종사 28명, 정비사 6명, 운항·관제사 12명)

채용기관	채용예정인원				
	조종사(소방위)		정비사(소방장)	운항·관제사(소방교)	
	남성	남녀공통	남성	남성	남녀공통
합계(46명)	27	1	6	6	6
서울소방본부	2				
부산소방본부	2				
대구소방본부	3			2	
인천소방본부	3				
광주소방본부	1		1		
대전소방본부				1	
울산소방본부	1				
경기소방본부	5		1		1
충북소방본부			1		
충남소방본부	1			2	
전남소방본부		1			1
경북소방본부	3			1	
경남소방본부	4		2		2
제주소방본부	2		1		2

※ 채용분야 및 채용예정인원은 시도소방본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119고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합니다.

※ 변경사항 : 인천 항공분야 조종사 남성 채용예정인원 변경(변경전 1명 → 변경후 3명)

2. 채용일정 : 서류전형 → 실기시험 → 면접시험

가.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 2021. 4. 5.(월) 10:00 ~ 4. 7.(수) 18:00

※ 원서접수 결과 공개 : 4. 12.(수) 14:00

※ 응시수수료 : 7,000원(소방위·소방장) / 5,000원(소방교)

※ 응시원서는 119고시(<http://119gosi.kr>) 및 소방청(<http://www.nfa.go.kr>)에서 내려받아 사용

나. 접수장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9 한림프라자 506(우 30127)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채용담당자 앞(소방공무원 항공분야 응시원서 재중),

☎ 문의전화 044-205-7287~94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 접수(원서접수 기간 내에 도착여부 확인 할 것)

※ 우편접수(우체국 택배)는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팩스·퀵서비스·택배 등은 접수하지 않음

라. 시험일정(인·적성검사 포함)

시험단계		시험장소(공고)	시험일시	합격발표
• 서류전형(서류제출)		-	서류제출 4.5. ~ 4.7.	5. 4.
• 실기시험	조종사	5. 4.	5.10. ~ 14.	6. 2.
	정비사		5.17. ~ 21.	
	운항·관제		5.17. ~ 21.	
• 인·적성검사 (신체검사서 제출)		6. 2.	6.15. ~ 17.	면접시험시 참고자료로 제공
• 면접시험	조종사	6. 2.	6.28. ~ 7.2.	7. 13. (최종 합격발표)
	정비사			
	운항·관제			
※ 본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향후 일정은 별도 공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실기시험방법 및 평가내용

시험구분	평가방법	평가내용
조 종 사	모의비행평가	기본비행, 소방임무형 비행, 기본계기비행, 항공안전
정 비 사	구술평가	정비분야 기술역량, 관리역량, 업무역량
운항·관제사	구술평가	운항·관제분야 기술역량, 관리역량, 업무역량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면접시험 최종일까지 유효하여야 함.)

○ 아래의 관계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26조의3(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국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로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분야에는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의 존립과 헌법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한 국가안보 분야
2.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하게 되는 보안·기밀 분야
3. 외교, 국가 간 이해관계와 관련된 정책결정 및 집행 등 복수국적자의 임용이 부적합한 분야

◆ 공무원임용령

제4조(외국인과 복수국적자의 임용)

②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법령으로 정한 각 기관의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분야에는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라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2. 대통령 및 국무총리 등 국가 중요 인사의 국정수행 보좌 및 경호에 관한 분야
3. 외교관계·통상교섭 및 국제협정에 관한 분야
4. 남북간 대화·교류·협력 및 통일에 관한 분야
5. 검찰·교정 및 출입국관리에 관한 분야
6. 군정 및 군령, 무기체계 획득, 방위력 개선 및 그 밖의 군사에 관한 분야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8. 그 밖에 보안 시설·지역 출입, 비밀문서·자재 취급 등 업무의 성질상 국가의 안보 및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로서 복수국적자가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소속 장관이 정하는 분야

◆ 국적법

제11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등)

- ② 복수국적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외국 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15조(경력경쟁채용 등의 요건 등)

- ① 종전의 재직기관에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없다. 다만「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제9조제1항 및 그 밖의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의 기록이 말소된 사람(해당 법령에 따라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① 소방공무원의 채용시험 또는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③ 다른 법령에 의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의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여 당해 시험에의 응시자격이 정지중에 있는 자는 그 기간중 이 영에 의한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 **병역법 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고용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무원이나 임직원으로 임용하거나 채용할 수 없으며, 재직 중인 경우에는 해직하여야 한다.

1.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또는 확인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2.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3.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나.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분 야	자격(면허 및 경력제한)
조 종 사	「항공안전법」에 의한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을 취득한 후 회전익항공기 조종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회전익항공기 조종 경력이 총 1,500시간 이상(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 총 비행시간을 말함(운송용 또는 사업용조종사 자격 취득 전 비행시간 포함) ※ 비행시간은「항공안전법시행규칙」제77조에 따른 비행경력증명서에 의함 ② 최근 3년 이내 회전익 항공기 비행경력이 있는 자 ③ 전자전파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소지자 ④「항공안전법」제44조에 의한 계기비행 자격증명 소지자 ⑤『항공안전법』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 제1종 소지자
정 비 사	「항공안전법」에 의한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 근무 7년 이상인 자
운항·관제사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 근무 2년 이상 경력자(항공기 플랜)

다. 응시연령

구 분	채용계급	채용분야	연 령
경력경쟁 채용시험	소방위	조종	23세이상 45세이하(1975.1.1.~1998.12.31.)
	소방장	정비	23세이상 40세이하(1980.1.1.~1998.12.31.)
	소방교	운항·관제	20세이상 40세이하(1980.1.1.~2001.12.31.)
※ 다음 관계법령의 응시자는 아래와 같이 응시상한 연령을 연장함.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제대군인(사회복무요원 포함) - 「병역법」 제74조의2에 의거 승선근무예비역,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제외) 또는 대체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사람(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예정일 전 6개월 이내에 있는자 포함)			
복무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연장기간	1세	2세	3세

라. 신체조건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의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붙임1 참고),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붙임1-1 참고)

마. 거주지 : 제한 없음

<유의사항>	
※ 모든 자격(면허)은 합격일이 아닌, 발급(취득)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응시자격으로서의 면허 또는 자격보유의 효력이 유효하여야 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거나 소멸할 경우 응시자격은 박탈되고 합격 결정을 취소함	
※ 코로나19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을 연기하는 경우, 응시자격 등 기준일 판단은 아래와 같음	
① 첫 번째 시험 시행 전 : 연기·변경 후 시행되는 시험 예정일 적용(추가 원서접수 없음)	
② 첫 번째 시험 시행 후 : 당초 시험 예정일 적용	

4. 가산특전(붙임 3 참고)

구 분	가산비율	적용시기	비 고
취업지원대상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각 시험단계별 적용	- 취업지원대상자 또는 의사상자 등 가점은 1개만 적용
의사상자 등 (의사자 유족, 의상자 본인 및 가족)	과목별 만점의 3% 또는 5%		

Ⅱ. 시험방법

① 서류전형(제출서류)

<공통사항>

-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별지 제1호 서식>
- ② 응시원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7,000원 또는 5,000원 부착
-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④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개별사항>

구 분	제 출 서 류
헬기조종분야	① 자격표(국방부), 병적기록표(병무청), 군부대 경력증명서 중 다음 사항*이 기재된 것 1부(군 경력자에 한함) *임용사항, 근무경력, 징계사항 등이 상세히 기재된 것 ②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③ 비행경력증명서 1부(최종비행일 명시) ※ 모의비행 시간 미포함 ④ 운송용 또는 사업용 조종사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1부 ⑤ 계기비행자격증명서 1부 ⑥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1부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⑧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⑨ 「항공안전법」 제40조에 의한 항공신체검사증명서 1부. ⑩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병적사항, 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
헬기정비분야	① 회전익 항공정비사 자격증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⑤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⑩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병적사항, 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
운항·관제분야	①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1부 ② 경력증명서 1부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④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텍스 발행) 1부. ⑤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⑩ 주민등록초본(상세) 1부. (병적사항, 주민번호 모두 나오게 발급)

※ 경력증명서 제출시 유의사항

- ① 경력증명서 제출시 건강보험자격취득실확인서(www.nhic.or.kr 발급)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www.di.go.kr 발급)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공적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② 경력증명서는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 재직시 징계 사항 등의 경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확인·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③ 모든 증명서는 발행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하며, 외국어로 작성된 경력증명서를 제출할 경우 공증 받은 한국번역본을 원본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자격증(면허증) 등 서류 확인 결과 부적합한 자는 합격 취소 또는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됩니다.

② 실기시험

○ 대 상 자 : 서류전형(신체검사) 합격자

분야	실기시험
헬기조종	○ 헬기 조종능력(모의비행) - 10개항목[이륙·상승 및 선회, 강하 및 선회, 헬기장 접근, 구조 및 구급(호이스트), 화재진압(물바켓), 자세회복, 계기비행전환, 무선교신절차, CRM(승무원 자원관리), 비상절차]
헬기정비	○ 항공정비 실무지식(구술) - 10개항목(기체, 엔진및동력전달, 연료및유회환, 회전익, 유압및조종, 전기전자통신계기, 항공안전법및정비행정, 영어능력, CRM및항공안전, 정비사역할)
운항·관제	○ 항공 운항·관제 실무지식(구술) - 10개항목(운항계획, 항공정보, 입출항 절차, 비행 중절차, 운항관리,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비정상 운항절차, 회전익 운항기술기준, 항공영어 /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해당 자격증(조종사, 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또는 운항관리사)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평가기준 : 당해 분야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무능력을 각 평가항목별 10점 만점 기준 정수로 점수 부여
- 합격기준 : 평가항목별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60%이상 득점자(각 평가항목별 40%미만인 경우 불합격 처리) 중에서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범위안에서 결정하며,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를 초과하는 동점자는 모두 합격처리 합니다.

②-1. 인·적성검사 및 신체검사

<인·적성검사>

- 검사대상 : 실기시험 합격자
- 검사방법 : 응시자 집합 인·적성 검사(면접시험 참고자료로 활용)
-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

※ 응시자 유의사항 : 인·적성검사 결과는 면접위원에게 제공되는 자료로써 미 응시할 경우 불합격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신체검사> → 인·적성검사시 신체검사서 제출

- 대 상 : 실기시험 합격자
- 검사장소 : 소방청 지정 종합병원(붙임 1-3)
 - ※ 소방청에서 지정하지 않은 종합병원 검사결과는 인정하지 않음
 - ※ 조종사는 항공안전법 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으로 같음
- 검사방법 : 소방청 지정 종합병원을 방문「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붙임 1-2)」에 따라 검사
-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증명사진(3.5×4.5, 2매), 수수료(응시자 부담)

※ 신체검사 결과 판정보류 등 재검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방청에서 지정한 날까지 최종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체검사서 발급 시까지 병원 사정에 따라 상당 기간이 소요되니, 신체검사서 발급 병원에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 주의사항

- ① 제출서식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공무원 신체검사서 불인정)
- ②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 압인 또는 계인 처리
- ③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 직인 날인

③ 면접시험

- 대 상 자 : 실기시험 합격자
- 평가방법 : 1단계 집단면접(블라인드 면접), 2단계 개별면접 (붙임 2 참고)
- 준 비 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 합격기준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 불합격 기준
 -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⁰, D)를 평정한 경우
 -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Ⅲ. 최종합격자 발표

1. 최종합격자 공고

- 공고방법 : 119고시 게시

<최종 합격기준>

- ◇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실기시험성적 75%, 면접시험성적 25% 비율로 합산한 성적(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계산)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최종합격자 결정
-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채용예정인원에 미달하거나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 결정
-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선발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모두 합격 처리(동점자 결정은 총득점 기준)

Ⅳ. 응시자 유의사항

1. 공통사항

-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119고시(<http://gosi.kr>)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시험일정 및 정보는 119고시(<http://gosi.kr>)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으로,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열람 및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모든 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장소 등을 공지합니다
- 응시자는 모든 시험 시작 30분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여야 하며(이후 입장 불가), 30분 전까지 시험장에 입장하지 않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응시포기로 간주됩니다.
- **신분증 미지참 응시자는 모든 시험절차에서 응시 불가합니다.**
 - 인 정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 불인정 : 학생증, 자격수첩,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공무원증 등

※ 응시표 출력 후 → 모든 시험절차 지참
- 모든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제출서류(신체검사 등)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합니다.
- 시험 중 본인의 소지품은 본인이 관리하여야 하며 소지품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응시자가 접수한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사실여부를 관련 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응시원서 접수 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자(조종분야)에 대하여 시험당일 시험응시가 불가할 경우, 2주 후에 시험을 운영하니 이때에도 확진 및 자가격리자면 불합격됨을 알려드립니다.

- **경력경쟁채용대상 응시자의 자격증대여 및 허위경력 기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니 응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제28조(응시서류의제출등) 제3항 제5호)

- 경력이라 함은 임용예정 직렬 및 직류와 동일한 분야에서 직접 종사하면서 정기적인 보수를 지급받고 상근한 경력을 말함
 - 단지 해당경력과 관련된 기관·업종에 소속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근무 경력을 의미하고, 휴직 등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기간은 원칙적으로 경력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다만, 육아·질병에 의한 휴직 등(병가 기간 및 군인의 경우 국군병원 입원 기간 포함)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기간은 응시요건 기간의 10%의 범위 내에서는 근무경력으로 인정함.
- 시간제(기간제, 단시간근로자)으로 근무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는 다음과 같이 경력으로 산정함(단, 대상자는 근로계약을 제출하여야 하고, 근로계약서 미제출 및 분실 시 실제근로시간에 대해 당사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함)
 - (참고)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제17조에 따라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일, 임금지급방법, 사회보험 적용 등이 명시되어야 함(표준근로계약서에 따름)

(가) 상근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이 규정에 의한 상근근무란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예) 계약직으로 3년간 상근 근무 : 3년 인정

(나)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실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근무경력 계산
예)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 인정

(다)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당해 직무분야의 외부 전문가 2분의 1 이상을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에서 경력 인정범위를 결정
- 경력기간의 계산은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 경력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법인, 민간단체(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및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만 인정되며, 개인사업자 경력은 인정받을 수 없음(※ 법인 여부 확인 :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 / 법인등기열람)
 - 다만, 국가전문자격증을 소지하고 개인사업자(변호사, 의사 등)로 근무한 경우와 이들에 소속되어 근무한 관련분야 재직 경력도 예외적으로 인정함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KF94, 코와 입 막음)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응시자와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는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자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에 응시한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시험단계별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해당 시험장에서의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 후 응시

2. 원서접수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응시자는 응시원서접수 시 반드시 가산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접수 종료 이후 최초시험예정일 전일 까지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등 지정을 받은 응시자는 관련 증명서류를 채용기관으로 제출하여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접수 기간 내에 응시자가 응시수수료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자의 응시분야, 지역은 원서접수 종료 후 변경할 수 없으니,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신체검사

- 색각 이상자는 종합병원에서 사전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후 채용시험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식은 반드시「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공무원 신체검사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응시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 부착 사진은 검사를 실시한 종합병원의 압인 또는 계인 처리 되어야 합니다.
-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서는 담당의사 서명(인) 및 의료기관장의 직인이 날인 되어야 합니다.
- 신체검사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시험 응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소방청 지정 종합병원을 방문하여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에 따라 수검하고 채용기관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최종합격자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
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취소 또는 무효처리 합니다.

5. 기타사항

<문의전화>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2:00 ~ 13:00까지 제외)

◆ 채용시험(서류전형, 실기, 면접 등)

- 문의처 : 소방청 교육훈련담당관 준비단
- 연락처 : 044-205-7287~94

◆ 인터넷 원서접수 방법, 접수증 및 응시표 출력, 원서접수사이트 장애 관련

- 문의처 : SE코리아
- 연락처 : 053-474-1212

- 붙임 1.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1부.
- 1-1.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1부.
 - 1-2.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 1-3. 소방청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1부.
2.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1부.
3.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부.
4.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1부.

- 별지서식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1부<별지 제1호 서식>
- ②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 ③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 ④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

(아래의 합격기준은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별표5를 기준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부분별	합격기준
체격	양팔과 양다리가 완전하며, 가슴·배·입·구강 및 내장의 질환이 없어야 한다.
시력	두 눈의 맨눈 시력이 각각 0.3 이상이거나 교정 시력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수치로 기재)
색각(色覺)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청력	청력이 완전하여야 한다.(수치로 기재)
혈압	고혈압(수축기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것) 또는 저혈압(수축기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혈압이 60mmHg 미만인 것)이 아니어야 한다. (수치로 기재)
운동신경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없어야 한다.

※ 색맹 또는 색약 보정렌즈 사용금지(적발시 부정행위로 간주, 5년간 응시자격 제한)

소방공무원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기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6조 별표3)

구 분	내 용
1. 일반 결합	가. 예후가 불량한 악성종양 나. 난치의 사상균성 장기질환 다. 난치의 사상충병(회다리아병, 트리빠노쪼마병, 일본주혈흡충병) 라.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사람
2. 비·구강· 인후기관 계통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업무(이하 “소방업무”라 한다)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화 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구강·인후·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나. 정상적인 식사섭취가 곤란한 식도협착
3. 치아 계통	가. 진구성인 아래턱관절강직, 음식물을 씹는 근육(저작근)의 질환 및 손상으로 30mm 이상 입을 벌릴 수 없게 된 사람 나. 아래턱 관절이 탈골되어 다시 맞추기가 곤란하게 된 사람 다. 진구성 복잡악골절 상태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 라. 발음기능 및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잃은 사람
4. 흉부	가. 전염성 또는 중증 결핵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급성 및 만성 늑막질환 다. 비결핵성 질환인 중증 만성천식증, 중증 만성기관지염, 중증 기관지확장 증, 중증 폐기종, 중증 활동성 폐진균질환
5. 심장· 혈관 및 순환기 계통	가. 심부전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발작성 빈맥(150회/분 이상) 또는 기질성 부정맥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방실전도장애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맥류 마. 유착성 심낭염 바. 확진된 관상동맥질환(협심증 및 심근경색증) 사. 폐성심
6. 복부장기 및 내장 계통	가. 빈혈증 등의 질환과 관계있는 비장증대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만성활동성간염 또는 간경변증 다. 거대결장, 게실염, 회장염, 궤양성 대장염으로서 난치인 경우

구 분	내 용
7. 생식 비뇨기 계통	가. 중증 요실금 나. 진행성 신기능(腎機能) 장애를 동반하여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신질환(腎疾患) 다.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활동성 신결핵(腎結核) 또는 생식기결핵 라. 약물 등으로 조절되지 않는 신증후군(腎症候群)
8. 내분비 계통	가. 중증의 갑상선 기능이상으로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인 합병증 나.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히 지장을 주는 진행성 거인증 또는 말단비대증 다. 현재 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동반질환이 합병되어 있는 에디슨씨병 라. 현재 뇌하수체 기능 장애에 대한 약물(호르몬)치료를 받고 있지 않거나 뇌하수체선종의 기계적 압박에 의한 비가역적인 뇌신경장애 또는 뇌 기능장애 등의 합병증 마. 소방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당뇨병성 또는 대사질환성 합병증
9. 혈액 또는 조혈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치료하기 곤란한 혈우병 나. 혈소판 감소성 자반병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재생불량 빈혈 라.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용혈성 빈혈(용혈성 황달을 포함) 마. 진성적혈구 과다증 바. 백혈병
10. 신경 계통	가.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한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퇴행성 질환 및 탈수조성 질환(유전성 무도병,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보행실조증, 다발성경화증 포함) 라. 뇌 종양 및 척수 종양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외상성 신경질환 바.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말초신경질환 사. 전신성·중증 근무력증 및 신경근 접합부 질환 아.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11. 사지	가. 소방장비를 사용하는데 지장이 있거나 필기능력이 없는 사람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골절·관절 질환자

구 분	내 용
12. 귀	가. <u>두 귀 중 하나 이상의 교정청력이 40dB 이상인 사람</u>
13. 눈	가. <u>두 눈 중 하나 이상의 맨눈시력이 0.3 미만이고 두 눈 중 하나 이상의 교정시력이 0.8 미만인 경우</u> 나. 두 눈의 시야협착이 모두 1/3 이상인 경우 다. 안구 및 그 부속기의 기질성·활동성·진행성 질환으로 인하여 시력유지에 위협이 되고 시기능에 장애가 되는 질환 라. 중심 시야 20 이내의 복시를 가져오는 안구운동장애 및 안구진탕(眼球振盪)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색각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약도를 제외한다))이 아니어야 한다.
14. 정신 계통	가.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지체 나.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성격 및 행동장애 다.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정신병 라. 마약중독 및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자 마. 소방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간질
15. 혈압	가. 고혈압 : 수축기 145mmHg을 초과 또는 확장기 90mmHg 초과 나. 저혈압 : 수축기 90mmHg 미만 또는 확장기 60mmHg 미만
16. 운동 신경	가. 신경 및 신체에 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기능상 장애가 있는 경우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별지 1)

(앞쪽)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사 진
(3cm×4cm)

※ 압인 또는 계인

수험번호	응시분야	성 명	생 년 월 일
검 사 내 용			
신	장	cm	체 중 혈 압 kg
시력	맨눈 교정	좌:수치 우:수치 좌:수치 우:수치	색 신 (색 각)
안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치 아		호 흡 기 질 환	
간 질 환		신 경 질 환	
소 화 기 질 환		피 부 질 환	
순 환 기 질 환		정 신 질 환	
비 뇨 기 질 환		혈청검사(매독)	
흉부 X선 검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하였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 사 결 과	[] 합 격	불합격 또는 합격 사유
합 격 여 부	[] 불 합 격	
	[] 판 정 보 류	
판정보류 사유 및 정밀검사 필요 여부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주소 :

전화번호(☎) :

의료기관의 장

(인)

유효기간 : 판정일로부터 1년

210mm× 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의료기관]

1. 검사내용란에는 검사자가 검사결과를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 기재

- 검사결과 기재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 또는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

2. 검사결과 합격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료기관의 장이 판정결과 등을 해당 []안에 √표로 표시하고 해당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판정보류 사유: 합격 또는 불합격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여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가. 합격사유 기재 예

- '만성골수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매독(syphilis)' 양성으로 나타나나, 유효적절한 치료로 전염성이 없음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불합격사유 기재 예

-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측 0.1 우측 0.1

- 혈소판 수가 혈액 1마이크로리터(microliter) 당 6만개 이하인 '혈소판 감소 자색반'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됨

3. 검사결과에 대한 판정은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별표 3에 의하여야 합니다.

<붙임 1-3>

소방공무원 신체검사 지정 종합병원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비고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 156, 2층 건강증진센터	02-2276-7155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서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15, 전문건설회관 15층 국가건강검진센터	1577-0075	
3	경찰병원(국립)	서울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이로 123, 3층 건강증진센터	02-3400-1365	
4	동아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26 (동대신동3가)	051-240-5310	
5	부산광역시의료원	부산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 (거제동)	051-607-2179	
6	부산대학교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179 (아미동1가)	051-240-7830	
7	부산성모병원(재단법인 천주교부산교구유지재단)	부산	부산광역시 남구 용호로232번길 25-14 (용호동)	051-933-7672	
8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줄은강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3 (남천동)	051-610-9865	
9	학교법인)동의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로 62 (양정동)	051-850-8763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부산보훈병원	부산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 (주례동)	051-601-6141	
11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동덕로 130(삼덕동 2가)	053-200-5791	
12	계명대학교동산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35(신당동)	053-258-4171	
13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두류공원로17길 33(대명동)	053-650-3534	
14	대구의료원	대구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로 157(중리동)	053-560-7387	
15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 99(신암동)	053-940-7025	
16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대구광역시 남구 현충로 170(대명동)	053-620-3180	
17	인천광역시의료원	인천	인천광역시 동구 방축로 217	032-580-6033~4	
18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동수로 56, 뇌병원 3층 건강관리센터	1544-9004, 내선번호2	
19	광주보훈병원	광주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 (산월동)	062-602-6114	
20	충남대학교병원(국가건강검진센터)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로 282 (대사동)	042-280-8535	
21	대전보훈병원	대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 (신탄진동)	042-939-0407	
22	학교법인 울산공업학원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77 울산대학교병원(전하동)	052-250-7000	
23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로 239	052-241-1114	
24	의료법인 해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 171번길 13(신정동)	052-259-5000	
25	아주대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1688-2118, 2번선택	
26	동수원병원	경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165	031-210-0285, 0777, 0294	
27	가톨릭대학교의정부성모병원	경기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271	031-820-3330	

연번	병원명	시도	주소	전화번호	비고
28	강원대학교병원(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6(효자동)	033-258-2448, 9274	
29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상급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일산동)	033-741-1670~2	
30	강릉아산병원(종합병원)	강원	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방동길 38	033-610-3698	
31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48(사직동)	043-279-2300	
32	청주 성모병원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주성로 173-19	043-219-8666	
33	천안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041-570-7200	
34	공주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77	041-570-1111	
35	서산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041-689-7000	
36	홍성의료원	충남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041-630-6114	
37	보령 아산병원	충남	충청남도 보령시 죽성로 136	041-930-5114	
38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금암동)	063-250-1295	
39	예수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365 (중화산동)	063-230-1515	
40	대자인병원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견훤로 390 (우아동)	063-250-8770	
41	목포시의료원	전남	전라남도 목포시 이로로 18	061-260-6500	
42	성가롤로병원	전남	전라남도 순천시 순광로 221	061-720-2000	
43	안동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안동시 태사2길 55	054-850-6271	
44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경북	경상북도 구미시 1공단로 179	054-468-9759	
45	포항세명기독병원	경북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51	054-289-1860	
46	김천의료원	경북	경상북도 김천시 모암길 24	054-429-8212	
47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055-360-1000	
48	의료법인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교육협력 중앙병원	경남	경상남도 김해시 분성로 94-8 (외동)	055-330-6000	
49	한일병원	경남	경상남도 진주시 범골로 17 지1,1~5,7층 (충무공동)	055-759-7777	
50	창원경상대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로 11	055-214-2050	
51	창원파티마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45	055-270-1350	
52	한마음창원병원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682번길 21	055-268-7891	'21년 3월 병원이전으로 주소,전화번호 변경 예정
53	제주한라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령로 65	064-740-5359	
54	중앙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랑로 91	064-786-7282	
55	제주대학교병원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란13길 15	064-717-1580	

소방공무원 면접시험 평가요소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단 계	평 가 요 소	평가점수(60점)
1단계 (집단면접)	① 전문지식.기술과 그 응용능력	10점
	② 창의력·의지력, 그 밖의 발전가능성	1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10점
2단계 (개별면접)	④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적성	20점
	⑤ 예의·품행·성실성 및 봉사정신	10점

○ 불합격 기준

- 5개의 평가요소 중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40% 미만의 점수(C⁰, D)**를 평정한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한 위원들의 평균점수가 30점 미만(총점의 50% 미만)인 경우

- 1단계(집단면접)와 2단계(개별면접)의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들의 평균점수가 30점 이상(총점의 50% 이상)인 경우 합격으로 결정

취업지원대상자 등 가점

1. 취업지원대상자

- 기준일시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업보호대상자로 등록된 경우에 한함
 - ※ 응시원서 제출이후 취업보호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필기시험 전일 18:00까지(도착) 채용기관으로 제출
- 가점부여점수 : 만점의 5% 또는 10%
- 적용대상 : 채용시험이 필기·실기·면접시험 등으로 구분되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마다 가점하며, 둘 이상의 과목으로 실시되는 시험에서는 각 과목별로 가점 한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의 점수가 만점의 40% 미만인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3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 4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1577-0606)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 발급(국가보훈처, 민원24시)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 ※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참고

2. 의사상자

○ 기준일시 :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의사상자 등으로 등록된 경우 한함

※ 응시원서 제출이후 의사상자 등으로 지정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필기 시험 전일 18:00까지(도착) 채용기관으로 제출

○ 가점부여점수 : 만점의 3% 또는 5%

◆ 각 과목별 만점의 5%를 가산하는 대상자

- 의사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

◆ 각 과목별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대상자

- 취업보호의 대상이 되는 의상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 적용대상 : 응시자의 각 과목별 득점에 점수를 가산, 다만, 응시자에게 만점의 40퍼센트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있거나,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시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가점인원 :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그 채용시험 선발 예정인원의 10%(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음.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으며, 9명 이하를 선발하는 채용시험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며, 분야별 10명 이상을 선발하는 경우에만 해당됨

○ 의사상자 여부 및 가점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직접 **보건복지부 (☎ 044-202-3258)에 확인**하여 응시원서 작성 시 반드시 기재

○ 응시원서 접수 시 가점 표기란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며, 응시자 부주의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 가점되지 않음

3. 유의사항

○ 취업지원대상자와 의사상자가 모두 해당 될 경우 **응시자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선택**

○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 시 가산점 표기 및 증빙 자료 첨부**(필기시험 OMR 답안지 가산점 표기 없음)

○ 가산점 잘못기재 또는 누락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책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참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소방공무원임용령 제51조)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 정지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또는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7.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권자가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 부정행위자가 당해 필기시험에서 작성한 모든 답안지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 시험 중에 소지하고 있는 응시표의 앞면 또는 뒷면에 시험문제와 관련된 사항이 인쇄되었거나 메모되어 있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부정한 자료로 판단되는 경우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자격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성 명	채용예정분야	채용예정직급	응 시 자 격

순서	제 출 목 록			제출여부	
				제출	미제출
1	응시원서 ▷ 별지 제2호 서식				
2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 별지 제3호 서식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 별지 제4호 서식				
구분	조종	정비	운항·관제		
4	① 자격표 등	① 회전인 항공정비사 자격증	① 운항관리사 또는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		
5	② 경력증명서(해당자)	② 경력증명서	② 경력증명서		
6	③ 비행경력증명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7	④ 운송용 또는 사업용 육상다발 자격증명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④ 소득금액증명원		
8	⑤ 계기비행자격증명서	⑤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⑤ 소방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9	⑥ 전파전자통신기사(산업기사) 또는 항공무선통신사 자격증	⑥ 주민등록초본	⑥ 주민등록초본		
10	⑦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1	⑧ 소득금액증명원				
12	⑨ 항공신체검사증명서				
13	⑩ 주민등록초본				

* 제출한 항목에 대하여 제출 여부 란에 “0”표시

* 응시자격요건 란은 본인에 해당하는 공고문의 분야별 응시자격요건을 그대로 기재

☞ 위 순서대로 제출(제본이나 편철하지 말고 집게로 집어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응 시 원 서

본인은 소방청 소방공무원 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소방청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응시시도 기재			
생년월일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 소	(☎)			정부수입인지 붙이는 곳 나군 : 7,000원 (전자수입인지의 경우 뒷장에 첨부)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 보완요구 자료		※ 제출일자		※ 보완접수 자료

(☎)
접 수 증 (소방공무원)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한글)			
2021년 월 일 소방청장 (☎)				

주 의 사 항

1. 우편접수 시 접수증은 회송하지 않습니다.
2. 시험당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 등록시간 안에 지정된 장소에서 등록해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소방공무원 조종분야, 정비분야, 항공·관제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도로명주소로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생년월일·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 국적명 기재
6.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 : 7천원(소방위·장) 또는 5천원(소방교)
 - 가. 구매방법 1 : 농협, 우체국 등 구매
 - 나. 구매방법 2 : 인터넷(<http://www.e-revenuestamp.or.kr>)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구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인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유의사항

응시원서 작성 시 응시자 부주의로 인한 잘못된 기재 또는 표기는 응시자 본인의 불이익이 됨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성명		응시부처	
생년월일	19 . . .	응시직급	

본인은 소방청에서 시행하는 소방공무원 항공분야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소방청이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1년 월 일

성명 : (서명)

소방청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 기관에서는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경력 조회에 관한 사항, 4대 보험 자격 득실, 소득금액증명에 해당하는 사항
-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항목 : 주민등록번호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공무원 채용 및 관리를 위해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1)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무원 채용 및 관리
- (2) 민감정보 수집 항목 : 범죄경력정보
- (3) 민감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 (4) 민감정보의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민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4. 복수국적자, 경력사항,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동의서 효력인정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시험실시기관은 응시요건 등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자료의 진위여부 등에 대한 진위여부를 해당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련자료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동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1)제공받는 자	(2) 제공목적	(3) 제공 항목	(4)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관할 출입국·외국인 청(사무소)	공무원 채용 관리	복수국적 여부 조회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기타 개인정보 보유기관	공무원 채용 관리	자격증, 경력사항 등 응시요건 충족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 자가격리 여부 확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정보처리 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공무원 채용 및 임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확인서 발급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5. 시험 부정행위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 제공받는 기관 : 인사혁신처

(2) 제공목적 :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여부 회신

(3) 제공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 포함)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4)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처분 있는 날로부터 5년 (행정정보공동이용 증적 보관)

* 개인정보 활용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

(5)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 년 월 일

성명 : (서명)

소방청장 귀하